



(www.cau.ac.kr)

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 개정

학 사 팀

심의 규정

I. 제·개정 규정

1.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이수 시행세칙 개정 1

9-35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 개정

가. 관련근거

- 1) 9-35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

나. 개정사유

- 1)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이 과거 학점인정과 교과목 인정으로 세칙이 구성되어 있었으나, 교과목 인정 규정을 삭제하면서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및 이수기준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부 개정 방식으로 개정
- 2) 교원자격증 발급에 따른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과목 이수 및 인정에 대한 학과의 권한 및 자율성 부여

다. 주요내용

- 1)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에 대한 기준 명확화
- 2) 편입학생 교양과목 이수 면제 규정 신설

라. 주무부서 : 교무처 학사팀

마. 관련 부서 및 협의여부 : 사범대학 교학지원팀, 기획처 기획팀

바. 시행일 : 공포일

사. 신구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중앙대학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52조 제2항에 따라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<신설> 제 2 장 학 점 인 정 편 입 학 자	제2조(적용대상) 이 시행세칙은 편입학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	대상 명확화
제4조(학점인정) 편입학한 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의학부 편입학자는 당해학년 수료 인정학점을 적용한다.	제3조(학점인정) 편입학자의 인정학점은 학칙 제59조 2항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.	조 번호 변경
1. <u>2학년 1학기 편입학자</u>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2. <u>3학년 1학기 편입학자</u>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3. 학사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	1. 2학년 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2. 3학년 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3. 학사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	규정 명확화
<신설>	4. 의학부로 편입한 자는 예과과정 2년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.	의학부 편입학자 수료 인정 기준 명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신설> <신설> 제5조(교과목 이수) ① 모든 교과목은 재학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졸업 시 까지 편입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각 대학별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의 학부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학점 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학과(부)별로 졸업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. ③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이수요구 학점은 별표 2와 같다. 1. ~ 7. 삭제(2012. 3. 1) ④ 편입학자의 전공기초과목은 학과(부)별 이수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학과(부)별 기준에 의해 이수하여야 한다. ⑤ 삭제(2012. 3. 1)	5. 약학부로 편입한 자는 편입학 학점을 인정하지 않고, 입학 시 학년을 3학년으로 한다. 6. 간호학과로 편입한 자는 간호학과 2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7. 사범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전적대학 이수과목 및 학점에 따라 해당 학과에서 개인별 인정과목 및 학점을 달리할 수 있다. 단, 최대 인정학점은 본조 2호에 따른다. 제4조(교과목 이수) ① 모든 교과목은 재학 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편입학자는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60조 및 학사운영규정 I 제67조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 ③ 편입학자의 전공기초과목은 학과(부)별 이수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학과(부)별 기준에 의해 이수하여야 한다. <삭제>	약학부 편입학자 기준 명시 간호학과 편입학자 이수 인정 기준 명시 사범대학 편입학자에 대한 학과별 자율 인정 규정 명시 제2항 및 제3항을 통합하여 조항전문 개정(관련 상위 규정 명시 및 별표 삭제) 항 번호 변경 삭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⑥ 학과(부)의 특성에 따라 편입학 이전 학기까지의 개설된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토록 학과(부)장이 명할 수 있다. <신설> 제6조(졸업요건) 편입학자는 부전공, 복수전공, 전공심화과정, 융합전공,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 제7조(학칙적용)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<u>본 대학교 학칙 등 관계</u> 규정을 적용한다.	④ 학과(부)의 특성에 따라 편입학 이전 학기까지의 개설된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토록 학과(부)장이 명할 수 있다. ⑤ <u>편입학자는 교양과목 이수기준을 면제한다.</u> 제5조(졸업요건) 편입학자는 부전공, 복수전공, 전공심화과정, 융합전공,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 제6조(준용규정)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부 칙 <개정 2020. 11. 16.>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② (적용례)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조 (학점인정)7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.	항 번호 변경 편입학자 교양과목 이수기준 면제 근거 명시 조 번호 변경 조 제목 변경 및 문구 수정 시행일 및 적용례 정함

<끝>